

| | |
|---|---|
|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 한화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화 카자흐스탄&유라시아 증권 투자신탁 1 호(주식-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 카자흐스탄&유라시아 증권 투자신탁 1 호(주식-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한화 카자흐스탄&유라시아 증권 투자신탁 1 호(주식-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hanwha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4 년 2 월 21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4 년 2 월 26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10 조좌까지 모집
 [모집(매출) 총액 : 10 조원]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화자산운용(주) 본점/ 금융위원회 /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은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서 목차

| | |
|--|-----------|
|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5 |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
| 3. 모집예정금액 | |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
| 5. 인수에 관한 사항 | |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7 |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 |
| 4. 집합투자업자 | |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 |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
|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29 |
| 1. 재무정보 | |
| 2. 연도별 실적 및 환매현황 | |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

| | |
|---|-----------|
|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35 |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
|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 |
|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
|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
|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
| | |
|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39 |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
|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명 칭 | 한화 카자흐스탄&유라시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펀드코드: 77130) | | | | | | | | | | |
|----------------|--|-------|-------|-------|-------|-------|-------|-------|-------|-------|-------|
| (종류) 클래스 | A | A-e | C1 | C2 | C3 | C4 | C5 | Cf | Cw | C-e | 직판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77126 | 77128 | 77127 | 99400 | 99401 | 99402 | 99403 | 92532 | 92533 | 77129 | 93954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단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명 칭 | 한화카자흐스탄&유라시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펀드코드: 77130) | | | | | | | | | | |
|----------------|---|-------|-------|-------|-------|-------|-------|-------|-------|-------|-------|
| (종류) 클래스 | A | A-e | C1 | C2 | C3 | C4 | C5 | Cf | Cw | C-e | 직판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77126 | 77128 | 77127 | 99400 | 99401 | 99402 | 99403 | 92532 | 92533 | 77129 | 93954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변경시행일 | 변경사항 |
|------------|---|
| 2007.12.14 | 최초설정 |
| 2009.05.02 |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 한화 카자흐스탄 주식투자신탁 1호 → 한화 카자흐스탄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
| 2010.04.01 | 일반사무관리회사(신한아이타스(주))와 업무위탁계약 체결 |
| 2010.05.03 | 종류C1 및 종류C-e 판매회사보수 인하 |
| 2011.01.10 | 2단계 판매회사보수 인하 및 시행에 따른 종류C2, C3, C4, C5신설 |
| 2013.01.28 | ▷ 투자대상 지역 확대에 따른 변경사항 - 투자신탁 명칭 : 한화 카자흐스탄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 한화 카자흐스탄&유라시아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재간접형) - 해외투자자문회사와의 자문계약 해지 - 집합투자업자보수 인하 - 비교지수 변경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계약의 종료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 회 사 명 |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63 (대표전화 : 02-6950-0000) |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기준일: 2014년 2월 26일)

한화 카자흐스탄&유라시아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재간접형)

| 구분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경력 및 이력 |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 |
| 책임운용 전문인력 | 박준홍 | 1965 | 팀장 | 54개 | 14,203억 | - 경북대(경영학) - 한국투자신탁(9년 3개월) - KIM Asia Ltd., Hong Kong (3년) - 한국투자증권(4년 1개월) - 도이치은행(9개월) - 동부자산운용(4년 7개월) - 한화자산운용(2011. 12 ~ 현재) |
| 부책임 운용 전문인력 | 박준우 | 1972 | 매니저 | 9개 | 283억 | - 서강대 대학원(경영학과) - 한화자산운용(2001년 7월~현재) |

주1) 이 투자신탁은 Global Equity 운용팀이 팀제로 운용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과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고,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기준일(2014년 2월 26일)에 운용전문인력이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는 기재가 불가능하여, 운용을 담당할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2014년 2월 21일 자료로 기재하였습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 책임운용역 | 운용 기간 |
|-------|-------------------------|
| 조정근 | 설정일 ~ 2011.10.03 |
| 권혁상 | 2011.10.04 ~ 2011.12.06 |
| 박준홍 | 2011.12.07 ~ |

다. 최근 3년간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 부책임운용역 | 운용 기간 |
|--------|-------------------------|
| 이정환 | ~ 2013. 6. 2 |
| 양우석 | 2013. 6. 3 ~ 2014.02.25 |
| 박준우 | 2014.02.26 ~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 | 펀드코드 | 가입자격 |
|-----|-------|-----------------------------|
| 종류A | 77126 |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

| | | |
|-------|-------|---|
| 종류A-e | 77128 | 온라인가입자,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
| 종류C1 | 77127 |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판매수수료 징구하지 않음 |
| 종류C2 | 99400 | 종류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판매수수료 징구하지 않음 |
| 종류C3 | 99401 | 종류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판매수수료 징구하지 않음 |
| 종류C4 | 99402 | 종류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판매수수료 징구하지 않음 |
| 종류C5 | 99403 | 종류C4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판매수수료 징구하지 않음 |
| 종류Cf | 92532 |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50억이상 개인 및 법인, 판매수수료 징구하지 않음 |
| 종류Cw | 92533 | 판매사 일임형 Wrap, 판매수수료 징구하지 않음 |
| 종류C-e | 77129 | 온라인 가입자, 판매수수료 징구하지 않음 |
| 종류직판 | 93954 | 운용사직판, 판매수수료 징구하지 않음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유라시아관련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당해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투자대상국가의 주가, 금리, 환율 및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용어 설명]

- 유라시아: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를 지칭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 투자대상 종류 | | 투자비율 | 투자대상 세부설명 |
|----------------|-------------|--------|--|
| 1.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 | 집합투자증권 | 50% 이상 | -집합투자증권이란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을 말함 |
| | 주식 | - |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이라 한다.) -유라시아지역(중앙아시아, 러시아 및 동유럽에 한한다. 이하 이와 같다.)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유라시아지역에 본사를 둔 법인 또는 유라시아지역에서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하 “유라시아관련주식”이라 한다.) |
| |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 | ✓ | 유라시아관련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유라시아관련주식에의 투자 : 60% 이상 |

한화 카자흐스탄&유라시아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재간접형)

| | | | |
|--------------------|--------|-----------------|---|
| 2. 채권 | | 40% 이하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
| 3. 어음 | | 40% 이하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
| 4. 자산유동화증권 | | 40% 이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
| 5.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 위험평가액 10% 이하 |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
| | 장외파생상품 | |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
| 6. 국내외 금리스왑거래 | | 100% 이하 |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
| 7. 환매조건부매도 | | 50% 이하 |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
| 8. 증권의 대여 | | 50% 이하 |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
| 9. 증권의 차입 | | 20% 이하 | 제 1 호 내지 4 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
| 10.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 | - |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예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제 1 호 내지 2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

| | | |
|-----------------------|---|---|
| 11.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 위에 기재된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는 주된 투자대상의 변경에 의해 2013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서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는 포트폴리오 변경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2013년 2월 15일까지 충족하도록 합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p>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p> <p>가.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p> |
| ② 동일종목 증권 | <p>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 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 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 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 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p> |

| | |
|---------------------|--|
| <p>③집합투자증권</p> | <p>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 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
| <p>④동일법인발행 지분증권</p> | <p>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 하여 투자하는 행위</p> |
| <p>⑤파생상품</p> | <p>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
| <p>⑥파생상품</p> | <p>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
| <p>⑦장외파생상품</p> | <p>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
| <p>⑧장외파생상품</p> | <p>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p> |
| <p>⑨계열회사 발행증권</p> | <p>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p> |
| <p>⑩후순위채권</p> | <p>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p> |

<투자한도 및 투자제한의 예외>

| |
|--|
|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①,②,③,④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①,②,③,④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⑤,⑥,⑦,⑧,⑨의 투자한도 및 상기의 나.투자제한의 ②,③,④,⑤,⑥,⑦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p> |
|--|

-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상기의 나.투자제한의 ②의 본문,③의 가 및 나, ⑤,⑥,⑦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의 나.투자제한의 ③의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9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 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만 해당한다)
 - 가.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 나.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다.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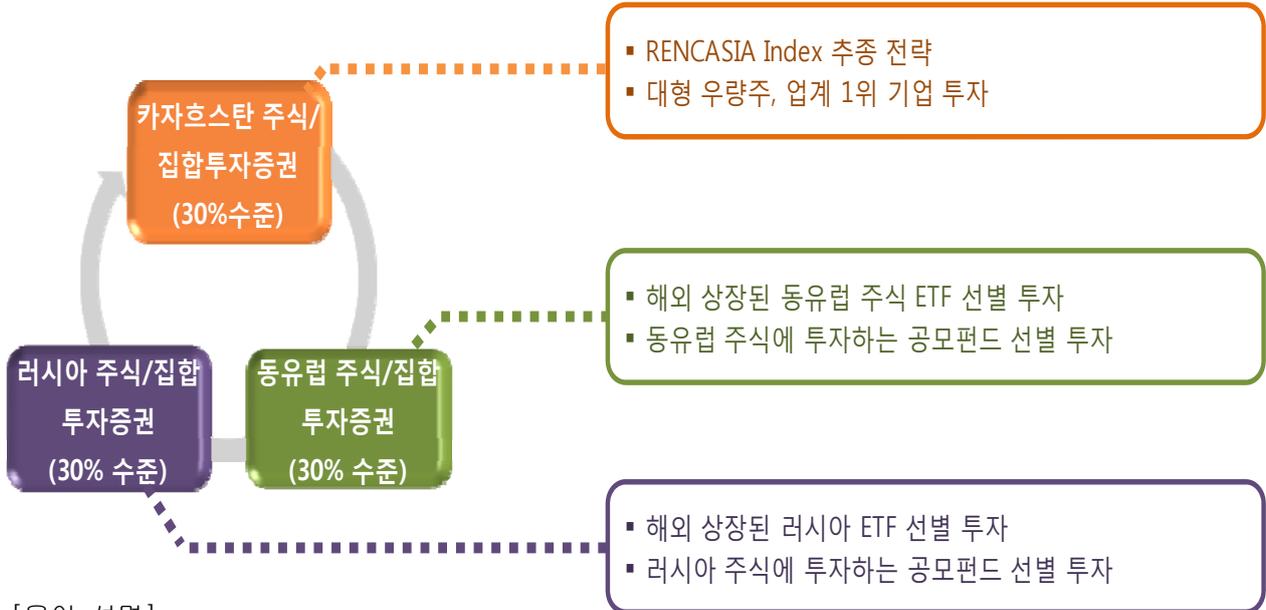
(1)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투자전략의 개요

- 이 투자신탁은 경제의 잠재성장성이 높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이하 “유라시아”라고 함)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유라시아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 투자신탁의 유동성을 위하여 주식의 경우 선진국 등에 상장된 유라시아관련 기업의 주식 등에도 일부 투자합니다.

□ 자산배분 전략

카자흐스탄, 동유럽, 러시아에 대한 투자 비중은 동일 비중 투자를 기본으로 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 (±10%pt)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Rencasia Index: 러시아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르네상스 캐피탈에서 발표하는 주가지수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상장 주식으로 구성된 주가지수. 신흥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동성이 뛰어난 주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목 최대 비중을 15% 제한하여 쏠림 현상을 방지한 지수

□ 국내유가증권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또는 신용도 높은 은행채에 투자를 하고, 투자시점 신용등급이 A- 이상인 우량은행이 발행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또는 예금에 운용될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지역 현황

이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주요 투자대상 국가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유라시아 주요국 현황 | 러시아 |
| | 카자흐스탄 |
| | 터키 |
| | 폴란드 |

한화 카자흐스탄&유라시아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재간접형)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률: 4.3%('11), 3.8%('10), 1.6%('09) - 인플레이션: 3.7%('12), 4.3%('11), 2.7%('10) - 시가총액 (거래소): USD 1,774 억('12) |
| | <p>체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1,055 만('12) - GDP: USD 2,170 억('11) - 경제성장률: 1.6%('11), 2.2%('10), -5.1%('09) - 인플레이션: 3.3%('12), 1.9%('11), 1.4%('10) - 시가총액 (거래소): USD 389 억('12) |
| | <p>헝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996 만('12) - GDP: USD 1,400 억('11) - 경제성장률: 2.0%('11), 1.5%('10), -6.7%('09), - 인플레이션: 5.7%('12), 3.9%('11), 4.9%('10) - 시가총액 (거래소): USD 206 억('12) |

자료: IMF(인구, 인플레이션), World Bank(GDP, 경제성장률), Bloomberg(시가총액)
 주: 인플레는 CPI 기간 중 평균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전략적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 지수 : RENCASIA Index 30%, Market Vectors Russia Index TR 30%, MSCI EM Europe 10/40 30%, 매경 BP 콜 10%

| |
|--|
| <p>▷ Rencasia Index: 러시아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르네상스 캐피탈에서 발표하는 주가지수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상장 주식으로 구성된 주가지수. 신흥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동성이 뛰어난 주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목 최대 비중을 15% 제한하여 쏠림 현상을 방지한 지수</p> <p>▷ Market Vector Russia Index TR: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Van Eck Global의 자회사인 Market Vector에서 발표하는 주가지수로, 러시아의 상장 주식 혹은 영업이익의 50% 이상이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주식으로 구성된 주가지수. 관련 종목 중 사이즈와 유동성을 감안하여 시가총액 기준으로 구성되며, 종목 최대 비중은 8%로 제한됨</p> <p>▷ MSCI EM Europe 10/40: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자회사인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주가지수로, 동유럽등 신흥 유럽지역의 상장 주식으로 구성된 주가지수. 유럽연합 국가들의 펀드 관련 투자 제한인 UCITS III (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중 '동일그룹 투자제한 펀드 순자산의 10% 미만, 펀드 순자산의 5% 이상인 그룹들의 총 투자제한 펀드 순자산의 40% 미만' 를 반영하여 적절한 비교지수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지수로서, 모지수인 MSCI EM Europe 과의 추적오차와 회전율을 최소화하면서 지수의 안정성을 보강한 지수</p> <p>▷ 매경BP Call: 한국채권평가에서 발표하는 단기자금시장지수 중 하나로서, 콜금리의 변동성과 성과를 보여주는 유동성 지수</p> |
|--|

(3) 위험관리 전략

- 위험관리체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회사 전체의 위험 정책을 수립·변경하며 자산별, 펀드별

투자 가이드라인을 설정합니다. 위험관리부서는 자산별, 펀드별 거래한도 및 투자한도, 또는 손실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핵심 위험요인을 정의하여 포트폴리오 위험을 측정·관리합니다. 정기적으로 운용부서 및 운용본부장에게 포트폴리오 위험, 기준지수 대비 성과, 요인분석 및 추적오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이하 관계자들이 사후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결정합니다.

- 환위험 관리

1) 환헤지 여부

- 이 투자신탁은 유라시아관련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유라시아관련주식에 주로 투자하며,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환헤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 환헤지란 환율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2) 환헤지 방법 및 목표 헤지비용

- 이 투자신탁은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통화선물,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환율 변동위험을 헤지합니다.
- 환헤지 비율은 환헤지 가능한 순자산의 70% 이상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 등의 현지통화 자산은 관련통화의 파생상품시장 등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환헤지 비용 등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환헤지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동 투자신탁은 추가형·개방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 헤지는 불가능하며, 투자신탁 설정·해지, 환율변동, 추가변동, 포트폴리오 변경 및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용은 목표 헤지비용과 상이할 수 있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헤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환헤지의 장단점

- 외국통화로 표시된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헤지를 실시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환헤지로 인하여 환차익(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4) 환헤지비용 등

-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며, 환헤지 계약 만기 후 재계약(roll-over)시 시장환율 및 선물환 프리미엄 등에 따라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헤지비용은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의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은 불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 섹터별 active weight : 포트폴리오에서 각 섹터(업종)가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지수에서 해당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 간 차이. 가령 기준지수가 KOSPI인 포트폴리오의 금융섹터 비중이 12%이고 KOSPI에서 금융섹터 비중이 15%라면 이 포트폴리오의 금융섹터 active weight은 -3%가 됩니다. 섹터별 active weight 절대값이 커지면 기준지수 대비 추적오차가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 베타 : 비교지수의 수익률 변화에 대해 포트폴리오 성과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비교지수가 일정 비율만큼 변화할 때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그에 비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가령 비교지수가 KOSPI라고 하면 베타가 1인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이 KOSPI 수익률 변동폭만큼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베타가 1보다 큰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이 KOSPI 수익률보다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며, 베타가 1보다 작은 포트폴리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유라시아관련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유라시아관련주식에 투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 및 환율의 변동 등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원금손실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자산가격 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유라시아관련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유라시아관련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이들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도 하락하게 됩니다. |
| 환율변동위험 | 외국 주식 및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헷지 가능한 주요통화(USD, EUR, GBP 등) 표시자산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해서만 한국원화간 선물환 계약 등을 환위험을 헷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목표 환헷지 비율은 환헷지 가능한 주요통화 순자산의 70% 이상이며, 그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도 있음), 기타 환헷지 수단이 없는 국가의 현지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환헷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 투자신탁은 추가형·개방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환헷지를 위해 파생상품에 투자하더라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헷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기준가격 산출에 있어 외화자산과 환헷지 목적으로 투자한 파생상품의 평가반영 시점이 상이한 경우 헷지효과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
| 신용위험 |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
|------------------|--|
| 이자율 변동위험 | 채권 및 어음 등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크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및 어음 등의 가격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 및 어음 등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파생상품 투자위험 |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지역위험 | 이 투자신탁은 유라시아관련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유라시아관련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부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거래상대방위험 | 이 투자신탁이 환율변동위험 헤지를 위해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인해 원리금이나 정산금액 등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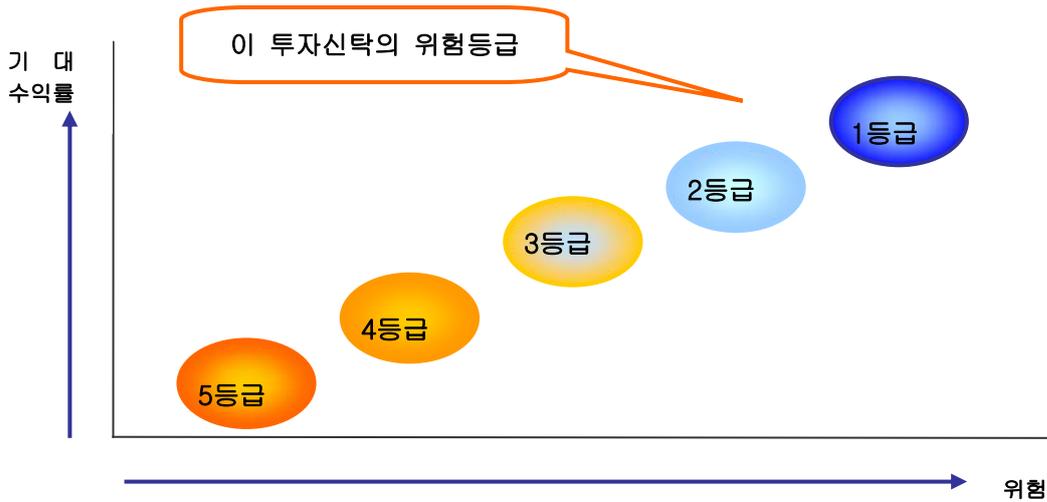
다. 기타 투자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유동성 위험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오퍼레이션 위험 |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
| 환매연기위험 |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투자설명서 ‘2부. 집합투자에 관한사항’의 ‘11.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환매’의 ‘(7)수익증권 환매연기’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

| | |
|-------------------------------------|--|
| <p>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의 위험</p> | <p>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p> |
| <p>기타위험</p> | <p>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예상하지 못한 가치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p>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환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유라시아관련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유라시아관련주식에 투자하여 가격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해외자산 투자에 따른 환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투자신탁이나,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혼합하여 투자하는 혼합형투자신탁 등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여 해외 주식 및 해외 집합투자증권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한화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예시)>

| 위험등급 | 분류기준 | 상세설명 |
|------|----------|---|
| 1등급 | 매우 높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 위험자산¹⁾편입비 60% 이상 또는 최대 위험자산편입비 70% 이상인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위험평가액²⁾이 10%를 초과할 수 있으면서, 구조상 최대손실가능성³⁾ 비율이 투자원금 대비 10% 초과인 집합투자기구⁴⁾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2등급 | 높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위험자산편입비 50% 이상 70%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 분산요건⁵⁾을 만족하는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저 주식편입비가 60% 이상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5년 이상 적립식으로만 투자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위험평가액이 10%를 초과할 수 있으면서 구조상 최대손실가능성 비율이 투자원금 대비 10% 이하인 집합투자기구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기등급채권 등⁶⁾에 순자산의 3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⁷⁾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3등급 | 중간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위험자산편입비 50%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 구조상 원금보존을 추구³⁾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금융공학적 운용기법을 도입한 원금보존 추구형이지만, 실제 운용상에서 손실가능성이 있는 집합투자기구 - 투기등급채권 등에 순자산의 3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4등급 | 낮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채 및 투자등급채권 등⁶⁾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국공채 및 투자등급채권 등에 7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듀레이션⁸⁾ 3년 이상이면서 국공채에 최저 7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5등급 | 매우 낮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듀레이션 3년 이하이면서 국공채에 최저 7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1) 위험자산은 주식, ETF, 주식형수익증권 등 실질적으로 주식투자 성격을 갖는 자산, 상품(Commodity), 지분, 대출 및 대출채권, REITs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파생상품위험평가액 기준)을 포함함

2) 파생상품위험평가액은 파생결합증권 투자금액을 포함함

3) 구조상 최대손실가능성 및 구조상 원금보존 추구형은 발행자에 관련된 신용위험은 감안하지 않고 설계구조만을 의미함

4) 파생상품위험평가액이 10%를 초과하여도 기초자산의 변동성, 거래상대방위험, 레버리지수준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5) 분산요건이라 함은 국내주식 100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KOSPI수준의 섹터분산이 된 지수를 의미함

6) 투기등급채권 등 이라함은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투기등급CP(B+등급 이하), 후순위채권을 포함하며, 투자등급채권 등 이라함은 투자등급채권, 투자등급CP, CD를 포함함

7)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담보, 신용보강, 레버리지수준, 투자지역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8) 듀레이션은 펀드의 실제 듀레이션이 아닌 비교지수의 듀레이션을 의미함

※ 위 위험등급분류는 한화자산운용이 자체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투자자의 위험성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위 위험등급분류에 적용되는 편입비는 모두 집합투자계약의 편입비를 의미함

※ 모자구조의 자펀드인 경우 모펀드에서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편입비율 및 자펀드의 모펀드 편입비율을 감안하여 등급을 부여함

※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형(Fund of Funds)의 경우 주로 편입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부여함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서 운용담당자, 상품개발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위험등급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음

※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판단함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예시 외에 고객 위험성향에 따라 국제적 분산투자 수단을 제공하는 재간접형 펀드를 포함하여 위 위험등급분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레버리지수준, 벤치마크지수의 위험수준, 분산투자수준, 목표트래킹에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환위험, 전략의 복잡성, 상품의 친밀도, 만기기간 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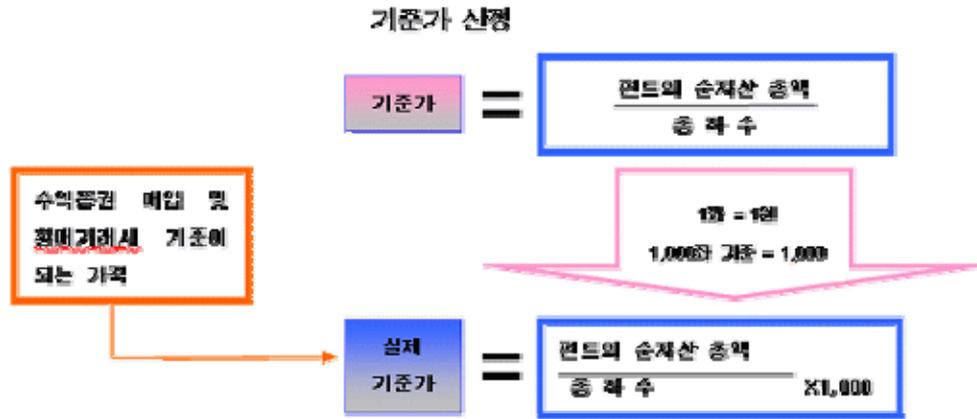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 분 | 내 용 |
|------------------|---|
|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
| 공시시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
| 공시방법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
| 공시장소 |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판매회사·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주요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산 | 평가방법 |
|---|--|
| ①상장주식 및 주식예탁증권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②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에서 공표하는 가격 |
| ③상장채무증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 등을 기초로 한 가격 |
| ④해외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⑤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다만,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국내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국내주식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은 다음에 따름 1. 증가과리율 ^{주1)} 이 ±2% 범위 이내일 경우 : 한국거래소 최종시가 2. 증가과리율이 ±2% 범위 초과일 경우 : 평가기준일에 공시된 최종 NAV(순자산가치) |
| ⑥외국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⑦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 (비상장주식,비상장채무증권)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격 1.취득가격 2.거래가격 3.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감정평가업자,투자매매업자 등이 제공한 가격 |
| ⑧장외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 -상품의 리턴이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으로서 |

한화 카자흐스탄&유라시아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재간접형)

| | |
|----------------------------|---|
| | <p>시초매매가 상품의 만기시까지 유지되는 상품 : 발행회사 및 채권평가회사2곳이 제공하는 평균 가격 중 낮은 가격</p> <p>-상품의 리턴이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으로서, 상품의 만기전에 비정기적으로 매매가 예상되는 상품 :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단순산술평균</p> |
| ⑨외화표시자산의 평가시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제공하는 최근 거래일의 환율정보를 이용한 환율 |

주1) 증가과리율 :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한국거래소 최종시가/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기준일에 공시된 최종 NAV(순자산가치)-1] × 100

다.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실물자산, 부실자산, 공정가격 산정이 곤란한 투자재산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구분 | 지급비율(또는 지급금액) | | | | | | | | | | | 지급 시기 |
|----------|-----------------|-------------|------------------------|-------|-------|-------|-------|-------|-------|--------|-------|-------|
| | 종류A | 종류A-e | 종류 C1 | 종류 C2 | 종류 C3 | 종류 C4 | 종류 C5 | 종류 Cf | 종류 Cw | 종류 C-e | 종류 직판 | |
| 선취 판매수수료 | 납입 금액의 1.0% | 납입 금액의 0.8% | - | | - | - | - | - | - | - | - | 매입 시 |
| 환매수수료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 | | | | | | | | 환매 시 |
| | 30일 이상 이익금의 70% | |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 | | | | | | | |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명칭 (종류) | 수익자 자격 | 기간 | 지급비율 (연간, %) | | | | | | | | 증권 거래 비용 |
|---------|---------------------|----|--------------|----------|----------|-------------|--------|----------|---------------------------|--------|----------|
| | | | 집합 투자업자 보수 | 판매 회사 보수 | 신탁 업자 보수 | 일반 사무 관리 보수 | 기타 비용 | 총보수 및 비용 | 총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 | |
| A | 제한 없음 | - | 0.50 | 0.80 | 0.07 | | 0.0458 | 1.4158 | 1.4158 | 0.1344 | |
| A-e | 온라인 가입자 | - | | 0.65 | | | 0.0457 | 1.2657 | 1.2657 | 0.1341 | |
| C1 | 제한 없음 | - | | 1.50 | | | - | 2.07 | 2.07 | - | |
| C2 | 종류C1 수익증권 1년 이상 보유자 | - | | 1.40 | | | - | 1.97 | 1.97 | - | |
| C3 | 종류C2 수익증권 1년 이상 보유자 | - | | 1.30 | | | 0.0406 | 1.9106 | 1.9106 | 0.1263 | |
| C4 | 종류C3 수익증권 1년 이상 보유자 | - | | 1.20 | | | 0.0288 | 1.7988 | 1.7988 | 0.1159 | |
| C5 | 종류C4 수익증권 1년 이상 보유자 | - | | 1.10 | | | 0.0461 | 1.7161 | 1.7161 | 0.1323 | |
| Cf | 집합투자기구, | - | | 0.90 | | | - | 1.47 | 1.47 | - | |

한화 카자흐스탄&유라시아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재간접형)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 기금, 50억 이상 개인 및 법인 | | | | | | | | |
| Cw | 판매사 Wrap | - | - | | | - | 0.57 | 0.57 | - |
| C-e | 온라인 가입자 | 2012.05.03 ~ 2013.05.02 | 1.11 | | | 0.0449 | 1.7249 | 1.7249 | 0.1309 |
| | | 2013.05.03 ~ | 1.00 | | | | 1.6149 | 1.6149 | |
| 직판 | 집합투자업자 직판 | - | - | | | 0.045 | 0.6150 | 0.6150 | 0.1316 |
| 지급시기 | | 매3개월 후급 및 투자신탁의 해지시 | | | 사유 발생시 | - | - | - | 사유 발생시 |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2011.12.14~2012.12.13)의 기타비용 비율을 기재하였으며,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2011.12.14~2012.12.13)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기준으로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3) 피투자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는 총보수·비용 지급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보수·비용 수준이지만, 편입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및 개별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비중 조절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므로 사전적으로는 확정할 수 없으며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을 연간 0.40%로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 총보수·비용은 이와 상이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 구분 | | 1년후 | 3년후 | 5년후 | 10년후 |
|--------|---|-----|-----|-------|-------|
| 종류 A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245 | 557 | 902 | 1,925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0.40%로 가정하여 포함) | 286 | 687 | 1,128 | 2,441 |
| 종류 A-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210 | 489 | 797 | 1,712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0.40%로 가정하여 포함) | 251 | 618 | 1,023 | 2,227 |
| 종류 C1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212 | 599 | 1,029 | 2,356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0.40%로 가정하여 포함) | 253 | 728 | 1,255 | 2,872 |
| 종류 Cf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51 | 475 | 833 | 1,895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0.40%로 가정하여 포함) | 192 | 604 | 1,059 | 2,411 |
| 종류 Cw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51 | 162 | 283 | 645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0.40%로 가정하여 포함) | 92 | 291 | 510 | 1,160 |
| 종류 C-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77 | 533 | 926 | 2,093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0.40%로 가정하여 포함) | 218 | 662 | 1,152 | 2,609 |

| | | | | | |
|-------|---|-----|-----|-----|-------|
| | 0.40%로 가정하여 포함) | | | | |
| 종류 직판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63 | 199 | 348 | 792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0.40%로 가정하여 포함) | 104 | 328 | 575 | 1,308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종류C1의 보수·비용은 투자자가 최초로 종류C1 수익증권에 가입한 후 기간 경과에 따라 종류C2, 종류C3,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하여 부담하게 되는 보수·비용의 예시입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일 익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②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제5기 및 제4기, 제3기의 각각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 대차대조표 | | | |
|----------|----------------|----------------|----------------|
| 항 목 | 제 5 기 | 제 4 기 | 제 3 기 |
| | (2012.12.13) | (2011.12.13) | (2010.12.13) |
| 운용자산 | 5,267,160,021 | 7,697,145,836 | 13,862,481,800 |
| 증권 | 4,888,209,483 | 7,255,358,559 | 13,600,220,884 |
| 파생상품 | 0 | 0 | 0 |
| 부동산/실물자산 | 0 | 0 | 0 |
| 현금 및 예치금 | 378,950,538 | 441,787,277 | 262,260,916 |
| 기타 운용자산 | 0 | 0 | 0 |
| 기타자산 | 113,730,006 | 125,497,603 | 271,350,322 |
| 자산총계 | 5,380,890,027 | 7,822,643,439 | 14,133,832,122 |
| 운용부채 | 0 | 0 | 0 |
| 기타부채 | 61,541,159 | 200,979,360 | 287,384,967 |
| 부채총계 | 61,541,159 | 200,979,360 | 287,384,967 |
| 원본 | 10,233,631,961 | 13,124,749,834 | 16,988,783,061 |
| 수익조정금 | 16,633,593 | -37,054,959 | -132,704,610 |
| 이익잉여금 | -4,930,916,686 | -5,466,030,796 | -3,009,631,296 |
| 자본총계 | 5,319,348,868 | 7,621,664,079 | 13,846,447,155 |

| 손익계산서 | | | |
|------------|-----------------------------|-----------------------------|-----------------------------|
| 항 목 | 제 5 기 | 제 4 기 | 제 3 기 |
| | (2011.12.14 - 2012.12.13) | (2010.12.14 - 2011.12.13) | (2009.12.14 - 2010.12.13) |
| 운용수익 | -684,309,969 | -2,605,497,820 | 2,068,139,740 |
| 이자수익 | 4,259,030 | 7,361,116 | 5,374,104 |
| 배당수익 | 145,265,892 | 195,570,015 | 171,845,583 |
| 매매/평가차익(손) | -833,834,891 | -2,808,428,951 | 1,890,920,053 |
| 기타수익 | 14,805 | 325,872 | 1,876,295 |
| 운용비용 | 99,828,632 | 171,806,048 | 226,152,112 |
| 관련회사 보수 | 99,828,632 | 171,806,048 | 226,152,112 |
| 매매수수료 | 0 | 0 | 0 |
| 기타비용 | 8,416,554 | 14,346,059 | 18,188,089 |
| 당기순이익 | -792,540,350 | -2,791,324,055 | 1,825,675,834 |
| 매매회전율 | 76.10 | 29.56 | 30.03 |

주) 이 투자신탁은 회계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받아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 억좌, 억원)

한화 카자흐스탄&유라시아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재간접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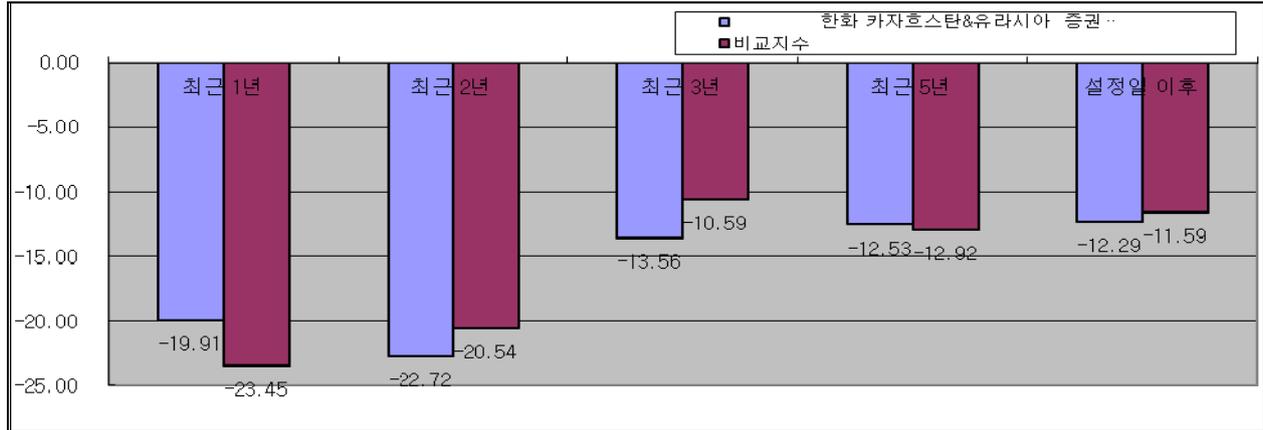
| 종류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A 클래스 | 2011.12.14 - 2012.12.13 | 80 | 43 | 3 | 1 | 20 | 11 | 63 | 30 |
| | 2010.12.14 - 2011.12.13 | 109 | 82 | 4 | 3 | 34 | 25 | 80 | 43 |
| | 2009.12.14 - 2010.12.13 | 152 | 100 | 8 | 5 | 50 | 35 | 109 | 82 |
| A-e 클래스 | 2011.12.14 - 2012.12.13 | 16 | 9 | 1 | 1 | 4 | 2 | 14 | 7 |
| | 2010.12.14 - 2011.12.13 | 19 | 14 | 2 | 2 | 5 | 4 | 16 | 9 |
| | 2009.12.14 - 2010.12.13 | 25 | 16 | 4 | 3 | 10 | 7 | 19 | 14 |
| C1 클래스 | 2011.12.14 - 2012.12.13 | 0 | 0 | 0 | 0 | 0 | 0 | 0 | 0 |
| | 2010.12.14 - 2011.12.13 | 10 | 7 | 0 | 0 | 10 | 7 | 0 | 0 |
| | 2009.12.14 - 2010.12.13 | 15 | 10 | 1 | 0 | 6 | 4 | 10 | 7 |
| C-e 클래스 | 2011.12.14 - 2012.12.13 | 2 | 1 | 0 | 0 | 0 | 0 | 2 | 1 |
| | 2010.12.14 - 2011.12.13 | 2 | 2 | 1 | 1 | 1 | 1 | 2 | 1 |
| | 2009.12.14 - 2010.12.13 | 2 | 2 | 1 | 1 | 2 | 1 | 2 | 2 |
| 직판 클래스 | 2011.12.14 - 2012.12.13 | 26 | 19 | 0 | 0 | 6 | 4 | 20 | 13 |
| | 2010.12.14 - 2011.12.13 | 29 | 29 | 4 | 4 | 8 | 8 | 26 | 19 |
| | 2009.12.14 - 2010.12.13 | 18 | 18 | 11 | 11 | 0 | 0 | 29 | 34 |
| A-e 클래스 | 2011.12.14 - 2012.12.13 | 16 | 9 | 1 | 1 | 4 | 2 | 14 | 7 |
| | 2010.12.14 - 2011.12.13 | 19 | 14 | 2 | 2 | 5 | 4 | 16 | 9 |
| | 2009.12.14 - 2010.12.13 | 25 | 16 | 4 | 3 | 10 | 7 | 19 | 14 |
| C2 클래스 | 2011.12.14 - 2012.12.13 | 0 | 0 | 0 | 0 | 0 | 0 | 0 | 0 |
| | 2010.12.14 - 2011.12.13 | 0 | 0 | 0 | 0 | 0 | 0 | 0 | 0 |
| C3 클래스 | 2011.12.14 - 2012.12.13 | 0 | 0 | 0 | 0 | 0 | 0 | 0 | 0 |
| | 2010.12.14 - 2011.12.13 | 0 | 0 | 6 | 5 | 6 | 5 | 0 | 0 |
| C4 클래스 | 2011.12.14 - 2012.12.13 | 7 | 4 | 0 | 0 | 7 | 4 | 0 | 0 |
| | 2010.12.14 - 2011.12.13 | 0 | 0 | 10 | 7 | 2 | 2 | 7 | 4 |

| | | | | | | | | | |
|--------|-------------------------|---|---|---|---|---|---|---|---|
| C5 클래스 | 2011.12.14 - 2012.12.13 | 0 | 0 | 4 | 4 | 1 | 1 | 3 | 3 |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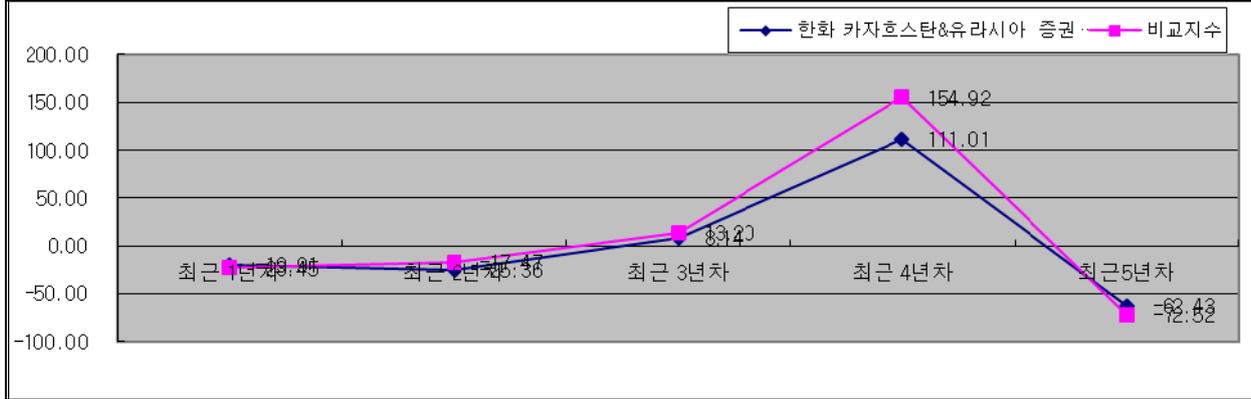
| 기간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 이후 |
|-------------------------------|--------------------|--------------------|--------------------|--------------------|--------------------|
| | 12.04.01 ~13.03.31 | 11.04.01 ~13.03.31 | 10.04.01 ~13.03.31 | 08.04.01 ~13.03.31 | 07.12.14 ~13.03.31 |
| 한화 카자흐스탄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 -19.91 | -22.72 | -13.56 | -12.53 | -12.29 |
| 비교지수 | -23.45 | -20.54 | -10.59 | -12.92 | -11.59 |
| 한화 카자흐스탄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A) | -21.30 | -24.10 | -15.10 | -14.06 | -13.82 |
| 비교지수 | -23.45 | -20.54 | -10.59 | -12.92 | -11.59 |
| 한화 카자흐스탄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A-e) | -21.17 | -23.98 | -14.96 | -13.94 | -13.69 |
| 비교지수 | -23.45 | -20.54 | -10.59 | -12.92 | -11.59 |
| 한화 카자흐스탄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C-e) | -21.55 | -24.39 | -15.43 | -14.34 | -14.11 |
| 비교지수 | -23.45 | -20.54 | -10.59 | -12.92 | -11.59 |
| 한화 카자흐스탄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직판) | -20.65 | -23.46 | -14.40 | | -1.14 |
| 비교지수 | -23.45 | -20.54 | -10.59 | | 2.95 |
| 한화 카자흐스탄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C3) | -21.67 | 0.04 | 1.83 | -4.57 | -4.92 |
| 비교지수 | -23.45 | -20.54 | -10.59 | -12.92 | -11.59 |
| 한화 카자흐스탄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C4) | 71.93 | 11.97 | 9.78 | -0.17 | -0.79 |
| 비교지수 | 44.26 | 9.08 | 10.44 | -1.16 | -0.36 |
| 한화 카자흐스탄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C5) | -21.54 | | | | -13.16 |
| 비교지수 | -23.45 | | | | -9.44 |

한화 카자흐스탄&유라시아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재간접형)

주1) 비교지수: RENCASIA * 70% + RTS * 30%

-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

| 기간 | 최근 1년차 | 최근 2년차 | 최근 3년차 | 최근 4년차 | 최근 5년차 |
|-------------------------------|-----------------------|-----------------------|-----------------------|-----------------------|-----------------------|
| | 12.04.01 ~13.03.31 | 11.04.01 ~12.03.31 | 10.04.01 ~11.03.31 | 09.04.01 ~10.03.31 | 08.04.01 ~09.03.31 |
| 한화 카자흐스탄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 -19.91 | -25.36 | 8.14 | 111.01 | -62.43 |
| 비교지수 | -23.45 | -17.47 | 13.20 | 154.92 | -72.52 |
| 한화 카자흐스탄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A) | -21.30 | -26.73 | 6.24 | 107.97 | -63.17 |
| 비교지수 | -23.45 | -17.47 | 13.20 | 154.92 | -72.52 |
| 한화 카자흐스탄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A-e) | -21.17 | -26.61 | 6.40 | 108.14 | -63.11 |
| 비교지수 | -23.45 | -17.47 | 13.20 | 154.92 | -72.52 |
| 한화 카자흐스탄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C-e) | -21.55 | -27.06 | 5.82 | 108.84 | -63.49 |
| 비교지수 | -23.45 | -17.47 | 13.20 | 154.92 | -72.52 |
| 한화 카자흐스탄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직판) | -20.65 | -26.11 | 7.09 | 76.80 | |
| 비교지수 | -23.45 | -17.47 | 13.20 | 81.06 | |
| 한화 카자흐스탄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C3) | -21.67 | | | | |
| 비교지수 | -23.45 | | | | |
| 한화 카자흐스탄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C4) | | | | | |
| 비교지수 | | | | | |
| 한화 카자흐스탄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C5) | -21.54 | | | | |
| 비교지수 | -23.45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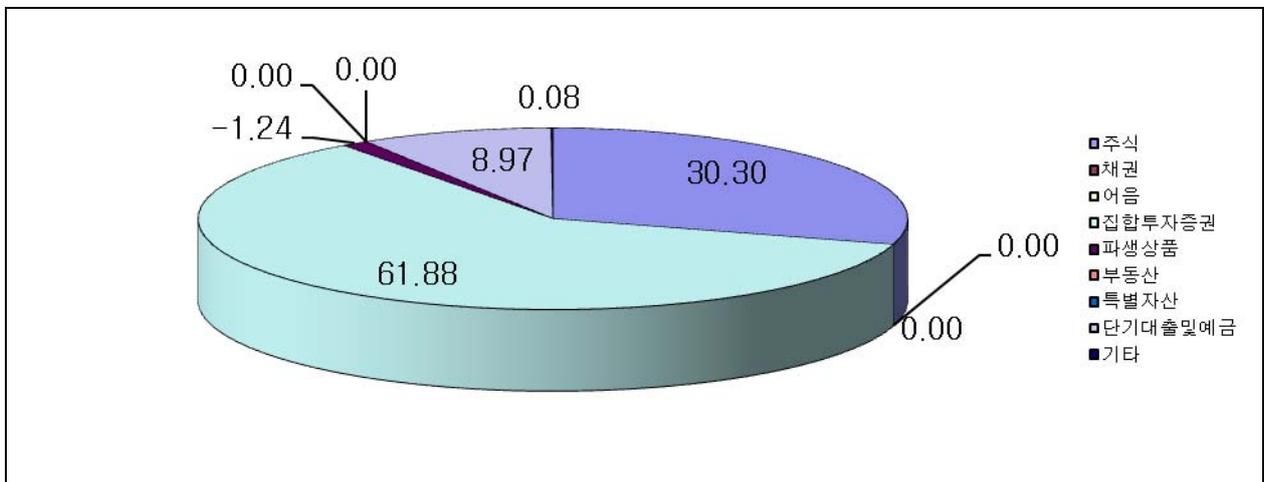
주1) 비교지수 : (1 * (0.3*[RenCap Central Asia Equity Index]+0.3*[Market Vector Russia Index TR]+0.3*[MSCI EM Europe 10/40]+0.1*[매경BP_MMI_CALL지수]))

한화 카자흐스탄&유라시아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재간접형)

-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 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1. 전체자산구성 현황



(2012.12.13 현재 /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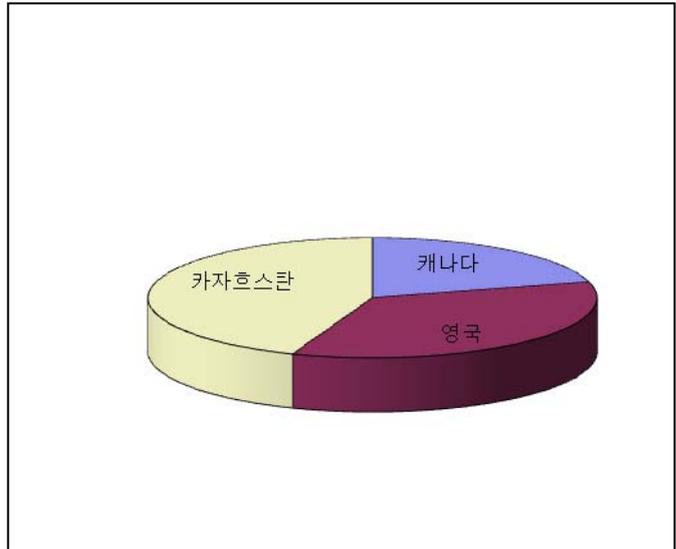
| 통화별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투자 증권 | 장내 | 장외 | | 실물자산 | 기타 | | | |
| KRW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 | 0 | 5 |
|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99.09) | (0.91) | (9.00) |
| CAD | 3 | 0 | | 0 | 0 | 0 | | 0 | | 0 | 0 | 3 |
| | (10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6.00) |
| EUR | 0 | 0 | | 12 | 0 | 0 | | 0 | | 0 | 0 | 12 |
| | (0.00) | (0.00) | (0.00) | (10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23.00) |
| GBP | 5 | 0 | | 0 | 0 | 0 | | 0 | | 0 | 0 | 5 |
| | (10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11.00) |
| USD | 7 | 0 | | 20 | 0 | -1 | | 0 | | 0 | 0 | 26 |
| | (26.21) | (0.00) | (0.00) | (75.95) | (0.00) | -(2.42) | (0.00) | (0.00) | (0.00) | (0.26) | (0.00) | (51.00) |
| 합계 | 16 | 0 | 0 | 32 | 0 | -1 | 0 | 0 | 0 | 5 | 0 | 51 |
| | (30.30) | (0.00) | (0.00) | (61.88) | (0.00) | -(1.24) | (0.00) | (0.00) | (0.00) | (8.97) | (0.08) | (100.00) |

주1)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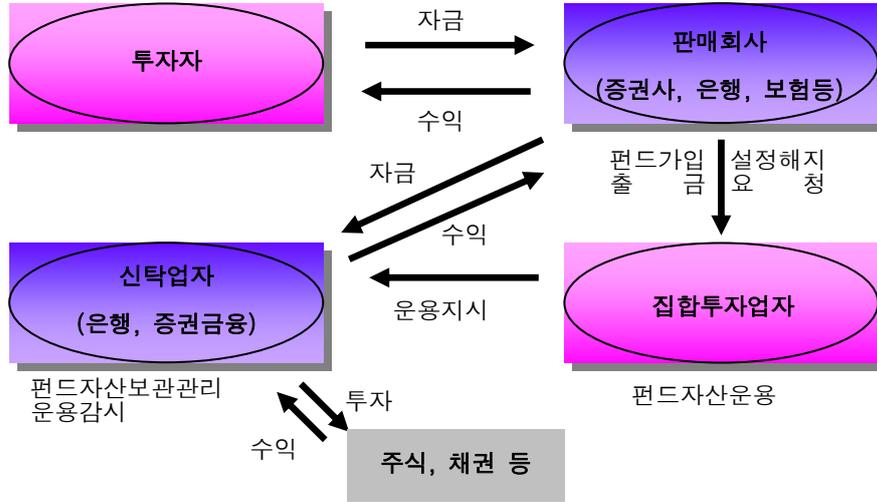
2. 투자대상 국가별 구성현황

(2012.12.13 현재 / 단위: 억원)

| 거래국 | 해외주식 | |
|-------|------|--------|
| | 금액 | 비중 |
| 캐나다 | 3 | 20.76% |
| 영국 | 5 | 35.02% |
| 카자흐스탄 | 7 | 44.22% |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 | | |
|----------|--|--|
| 회사명 |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63 (전화) 02-6950-0000 | |
| 회사 연혁 | 2011.09.19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출범 (한화투자신탁운용과 푸르덴셜자산운용의 합병) | |
| | 푸르덴셜자산운용 | 1982.06 국민투자신탁 설립 1998.02 국민투자신탁운용 설립 (국민투자신탁에서 운용조직 분리) 1999.02 현대투자신탁운용으로 상호 변경 2004.02 미국 Prudential Financial 자회사로 편입, 푸르덴셜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2010.06 한화그룹 계열사로 편입 |
| | 한화투자신탁운용 | 1988.04 제일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1996.08 한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
| 자본금 | 482.5억 | |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 대차대조표 | | | 손익계산서 | | |
|----------------|---------------------|---------------------|--------------|--------------------------|--------------------------|
| 항목 | 제25기 ('13.3.31) | 제24기 ('12.3.31) | 항목 | 제25기 (12.4.1~13.3.31) | 제24기 (11.4.1~12.3.31) |
| 현금및예치금 | 2,803 | 6,513 | 영업수익 | 45,412 | 30,021 |
| 유가증권 | 23,487 | 5,089 | 영업비용 | 31,172 | 22,859 |
| 대출채권 | 57,311 | 56,747 | 영업이익 | 14,240 | 7,163 |
| 유형자산 | 1,815 | 2,017 | 영업외수익 | 17 | 1,105 |
| 투자부동산 | 21,484 | 21,734 | 영업외비용 | 50 | 297 |
| 무형자산 | 5,043 | 5,855 | 법인세차감전 | 14,207 | 7,970 |
| 이연법인세자산 | 301 | 127 | 법인세비용 | 3,168 | 2,073 |
| 기타자산 | 496 | 341 | <u>당기순이익</u> | 11,039 | 5,897 |
| 자산총계 | 112,740 | 98,423 | | | |
| 예수부채 | 3,720 | 2,177 | | | |
| 미지급금 및 | | | | | |
| 기타금융부채 | 3,293 | 3,318 | | | |
| 충당부채 | 200 | 197 | | | |
| 퇴직급여채무 | 951 | 430 | | | |
| 당기법인세부채 | 2,446 | 1,063 | | | |
| 기타부채 | 279 | 455 | | | |
| 부채총계 | 10,889 | 7,640 | | | |
| 자본금 | 48,252 | 48,252 | | | |
| 자본잉여금 | 20,073 | 20,073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1 | 42 | | | |
| 이익잉여금 | 33,455 | 22,416 | | | |
| 자본총계 | 101,851 | 90,783 | | | |
| 부채및자본총계 | 112,740 | 98,423 | | | |

라. 운용자산 규모

(2014.1.15 현재, 단위: 억원)

| 구분 | 증권집합투자기구 | 부동산 | 특별 | 혼합 | 단기 | 총 계 |
|----|----------|-----|----|----|----|-----|
|----|----------|-----|----|----|----|-----|

| | 주식형 | 채권형 | 혼합형 | 계약형 | 재간접형 | 파생형 | 기타 | | 자산 | 자산 | 금융 | |
|-----|--------|--------|--------|-----|-------|--------|----|-------|--------|----|--------|---------|
| 수탁고 | 17,920 | 81,300 | 15,251 | 0 | 7,533 | 10,742 | 0 | 9,586 | 17,662 | 0 | 12,982 | 172,976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한국씨티은행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 (전 화) 02-1588-7000 |
|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 http://www.citibank.co.kr |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 | |
|--------------------|---|
| 회사명 | 신한아이타스㈜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전 화) 02-2168-0400 |
|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 www.shinhanaitas.com |

나. 주요업무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 구 분 | 한국자산평가 | NICE P&I | KIS Pricing Inc.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02)399-3350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02)398-3900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 길 38 02)3215-1400 |
| 홈페이지 주소 | www.koreaap.com | www.nicepni.com | www.bond.co.kr |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kofi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규약 제 45 조 제 1 항 제 3 호 내지 제 4 호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상기 3) 및 4)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기간: 2012.4.1 ~ 2013.3.31)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이해관계인의 범위]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 구 분 |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 | | | | |
|--------------|---|------------|---------|----------|-------------------|------|
| 가.증권 거래 | 평가항목 | 운용에 대한 기여도 | 주문체결 능력 | 비용 또는 수익 | 정보제공 및 settlement | 합계 |
| | 항목 가중치 | 50% | 15% | 10% | 25% | 100% |
| 나.장내 파생상품 거래 | * 각 평가항목은 5 척도(A, B, C, D, E)로 평가 * 각 등급별 투자중개업자의 비율은 A(15%), B(20%), C(30%), D(20%), E(15%)를 원칙, 상하 5% 범위 이내 조정 * 각 평가자가 평가한 5 척도의 환산점수는 A(10 점),B(8 점),C(6 점), D(4 점),E(2 점) * 각 평가항목별 평가치를 항목가중치로 가중 평균하여 합산. * 각 거래 자산별로 일정한 수의 범위 이내에서 거래 가능한 투자중개업자로 선정 | | | | | |

* 증권, 장내파생상품 중 일부 자산은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선정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용어풀이

| 용어 | 내용 |
|----------------|--|
| 금융투자상품 |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
| 집합투자 |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 펀드 |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
|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수익증권 |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순자산 |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
|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개방형 |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추가형 |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모자형 |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
| 종류형 |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자본이익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차익을 말합니다. |
| 배당소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
| 보수 |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선취수수료 |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환매수수료 |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
| 설정 |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
| 해지 |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투자자총회 |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과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비교지수 |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
| 레버리지효과 |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
| 선물환거래 | 미래의 거래 환율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
| 금리스왑 |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며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
| 성과보수 |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

한화 카자흐스탄&유라시아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재간접형)

| | |
|-----------|---|
| | 사모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
| 신주인수권부 사채 |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
| 전환사채 |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
| 주식워런트 |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

